

[2] 류춘렬·배진한, “위성방송에서의 시청자 권익신장과 보편적 서비스 구현방안”,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2000년 여름호』, p.153
 [3] 신용희, “보편적 서비스의 역동성과 최근 동향”, ETRI, 2003
 [4] 이상규 외, “새로운 통신환경에 적합한 규제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용역사업 보고 03-05, 2003. 12, p.26
 [5] 연도별 한국인터넷백서
 [6] <http://kids.itfind.or.kr:8888/WZIN/jugidong/1104/110404.htm>
 [7] <http://www.youngmedia.tv/wwwb/data/board1/bo009.hwp>

일본 총무성, 주파수 재편방침 책정

통신방송연구실 책임연구원 한은영
 (T. 570-4236, hey@kisdi.re.kr)

일본 총무성은 2003년 7월 30일 정보통신심의회의로부터 ‘중장기 전파이용의 전망과 행정의 역할: 전파정책비전’에 대한 답신을 받았다. 그리고 이 답신의 제언을 바탕으로 세계 최첨단의 무선 브로드밴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전파 개방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0일 주파수 재편 방침을 책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5년 후(2008년)까지의 주파수 재편 기본방침

주파수대	주요 재편대상 주파수	유의사항
800MHz대	MCA(멀티채널 액세스 시스템) 등에 분배된 주파수의 일부(8MHz 폭)	MCA 등에 분배된 주파수의 재편과 이를 이용한 800MHz대 휴대전화의 상향·하향 주파수의 변환을 단계적으로 실시
	800MHz대 휴대전화의 상향·하향의 주파수 변환(국제적 정합성을 위한 역전환)	
2GHz대	국제적으로 IMT-2000(제3세대 휴대전화)에 분배된 주파수(2010~2025MHz)	
1.7GHz대 2.5GHz대	국제적으로 IMT-2000에 추가 배분된 주파수(1710~1885MHz, 2500~2690MHz)의 일부	기존 또는 미래의 위성시스템을 고려하여 국내 추가 분배

우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고도화·이용 확대에 따라 ‘전파정책비전’에서의

주파수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중기적(5년 이내)으로는 1.7GHz대, 2.5GHz대를 중심으로 약 330~340MHz 폭으로, 장기적(10년 후)으로는 5~6GHz대 이하를 최대 약 1.38GHz 폭(현재의 약 5배 정도)의 주파수를 이동통신 시스템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편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다른 업무 등에 분배된 이하의 주파수대를 이동통신 시스템용의 주파수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표 2〉 5~10년 후(2013년)까지의 주파수 재편 기본방침

주파수대	주요 재편대상 주파수	유의사항
VHF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에 할당된 주파수(90~108/170~222MHz)	지상파 디지털음성방송과 이동통신 등 향후 주파수 수요에 따라 검토
UHF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에 할당된 주파수(710~770MHz)	710~722MHz는 방송업무의 사용에 관한 2006년까지의 재점검에 따라 검토
800MHz대	공공업무용(지역 방재 무선통신용)에 분배된 주파수(6MHz 폭)	공공업무용에 분배된 주파수의 재편과 이를 이용한 800MHz대 휴대전화의 상향 · 하향 주파수의 변환을 단계적으로 실시
	800MHz대 휴대전화의 상향·하향 주파수 변환(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역전환)	
	전기통신업무용(공항 무선전화)에 분배된 주파수(885~887MHz/830~832MHz)	2013년도 이후 재편 가능
1.5GHz대	MCA용 등에 분배된 주파수의 일부(1468~1477MHz/1516~1525MHz)	2009년 6월 1일 이후 재편 가능
3.5GHz대	방송사업용 고정업무에 분배된 주파수(2456~3600MHz)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후 재편 검토
	방송사업용 고정업무에 분배된 주파수(3400~3456MHz),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후에도 음성방송사업용 STL*/TTL**, 감시제어용 등으로 계속 이용 예상)	음성방송사업의 유지 발전, 지역 주파수 수요 및 대체 주파수의 확보를 고려하여 재편 여부 검토
4GHz대 5GHz대	전기통신 업무용 고정통신 등에 분배된 주파수의 일부	이 주파수대는 무선 LAN, NWA로의 추가분배 고려

주: * Studio to Transmitter Link(스튜디오와 송신소 간 방송중계회선)

** Transmitter to Transmitter Link(송신소 간 방송중계회선)

또한 '전과정책비전'의 주파수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무선 LAN(Local Area Network) · NWA(Nomadic Wireless Access) 시스템의 경우 5년 이내에 5GHz대를 이용한 무선 LAN · NWA의 고도화와 이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약 480MHz 폭(현재의 약 3배 정도)의

주파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10년 후) 5GHz대를 중심으로 최대 약 740MHz 폭(현재의 약 5배 정도)의 주파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일정 대역 확정형의 이용 등 5GHz대에서 수용불가능한 경우는 준(準)Mini파대의 이용확대 및 Mini파대의 개발·도입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표 3〉 5년 후(2008년)까지의 주파수 재편 기본방침

주파수대	주요 재편대상 주파수	유의사항
4.9GHz대	4.9~5.0GHz대(100MHz 폭)의 전기통신업무용 고정통신은 도시지역의 조기이행 완료에 따라 전용주파수대로 합	현재 사용기한은 2007년 11월말까지임
5.3GHz대	5.25~5.35GHz대(100MHz 폭)를 기상레이더와의 공용·이행 검토	WRC-03에서 옥내 사용, 한정적인 옥외 사용으로 분배 결정
5.7GHz대	5.470~5.725GHz대(255MHz 폭)를 레이더 등과의 공용·이행 가능성 검토	WRC-03에서 옥내·옥외 사용으로 분배 결정

〈표 4〉 5~10년 후(2013년)까지의 주파수 재편 기본방침

주파수대	주요 재편대상 주파수	유의사항
5GHz대	전기통신 업무용 고정통신 등에 분배된 주파수의 일부	이 주파수대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추가분배를 거쳐 검토
준(準) Mini파대 Mini파대	준(準) Mini파대의 이용 확대 Mini파대(59~66GHz) 개발·도입	

그리고 지상파 TV방송의 경우에는 3대 광역권(도쿄, 오사카, 나고야)에서 2003년 12월에, 기타 지역에서는 2006년말까지 디지털 방송을 개시하고, 2011년까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동시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상파 TV방송에 의한 VHF대의 사용은 2011년 7월까지로 하며, UHF대 내의 722MHz를 넘는 주파수의 사용은 2012년 7월까지로 하고, 이외 710MHz까지의 주파수 사용에 관해서는 2006년 7월까지 수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에 대해서는 물류관리 등 다양한 산업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135kHz대(10~135kHz), 13.5MHz대(13.553~13.567MHz), 2.4GHz대(2.4~2.4835GHz) 등이 확보되어 있으나 향후 다양한 용도에 대응하기 위해 950MHz대 부근 등의 새로운 주파수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UWB(Ultra Wideband) 무선 시스템은 마이크로파대(3.1~10.6GHz)로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심의회의 기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을 목표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관련 전파시스템은 기존 5.8GHz대(5.77~5.85 GHz)의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보가전의 경우 전파 이용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와 시장에서의 수요 등을 바탕으로 5GHz대 근처의 주파수 할당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인 이용 주파수와 필요 대역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 [1] 총무성 보도자료, “周波數の再編方針の公表”, 2003. 10. 10. (http://www.soumu.go.jp/s-news/2003/031010_4.html)

EU경쟁법의 수직적 제한 관련 규제동향

통신방송연구실 연구원 전종민
(T. 570-4122, onreading@kisdi.re.kr)

1. 개 요

EU의 경쟁법은 EU회원국 간의 교역에 영향을 주는 반경쟁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유럽의 경제·정치적 통합을 위한 각 회원국 규범의 일원화정신에 따라 각국의 경쟁법도 기본적으로 EU 경쟁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바뀌어 가고 있다. 각국이 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을 보면 지배사업자인 선행기업과 후발업체간의 상당한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제당국의 주요역할은 이러한 선행기업과 후발기업 간의 경쟁제한적 행태를 규제하여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을 이끌어 내는 데에 있다. 통신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쟁제한적 시장행태에 속하는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을 EU 경쟁법에서는 어떠한 논리와 절차를 통해 규제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요 내용

수직적 제한은 생산·유통단계에서 상부(upstream)와 하부(downstream)에 있는 독립적 기업간에 특수한 거래조건을 형성하는 관계를 말한다.¹⁾ 수직적 제한의 경제적 효과는 두 가